

4.1.18 실험실습기자재관리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09. 09. 07.

개정 2019. 07.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비품성 소프트웨어 패키지(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입 및 사용,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자재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기관 및 임무) 기자재의 관리기관 및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과장은 기자재의 확충사업 및 사후 관리를 통할한다.
2. 각 학부(과)장과 공동실험실습실의 책임교수(이하 “책임교수”라 한다)는 기자재의 구입 의뢰, 검수 및 인수, 기자재의 운용 및 수리의뢰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할 경우 기자재 담당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검수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될 때에는 기자재 담당교수 또는 구입 의뢰 교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기자재 담당교수는 기자재의 검수, 기자재의 경제적 운용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 ① 기자재의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16>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07.16>

③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07.16>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07.16>

1. 실습 기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2. 학과 우선 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과별 기자재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실험실습실 포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실험실습기자재에 관한 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07.16>

제5조 삭제 <2019.07.16>

제6조(기자재의 취득) 각 학부(과)장 및 책임교수는 기자재의 규격, 운용대책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종합 검토하고 효율적인 취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자재의 표시) 각 학부(과)장 및 책임교수는 기자재의 취득과 동시에 관리부서에서 발급하는 물품표시표를 부

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자재의 개별적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자재의 사용) ① 기자재는 실험실습 및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자재는 항상 필요한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제9조(기자재 조사계획) 관리계에서는 기자재 조사를 행할 때에는 자산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계획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자재 조사방법) 기자재 조사는 해당 운영부서장 및 사용책임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자재 조사) ① 실험실습기자재 조사는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조사는 년 2회(6월, 12월말 기준) 실시하며 특별조사는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조사는 5월과 11월에 학과자체에서 1차 조사하며, 6월과 12월에는 관리계에서 주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④ 3백만원 이상의 기자재를 고가 기자재라 하며 고가 기자재는 월 2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기자재의 점검 및 수리) ① 각 학부(과)장 및 책임교수는 매 학기말 기자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학부(과)장 및 책임교수는 기자재의 점검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때에는 수리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고 수리에 따른 반출 및 검수 등에 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자재의 안전관리) 각 학부(과)장 및 책임교수는 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청결유지
2. 화재 및 기자재의 도난 방지
3. 안전수칙의 게시 등 안전사고 예방

제14조(기자재 변상) 기자재 운영담당자 및 운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실 및 파손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